## **대지의 공지 기준**(제80조의2 관련)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가.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)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· 준공업지역: 1.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
나.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(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· 준공업지역: 1.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
다.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라.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
바.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・1미터 이상 6미터 이하(한옥의 경우

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,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)

2.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	·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(한옥의 경우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	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, 외벽선 1미터
(공동주택은 제외한다)	이상 2미터 이하)
나.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	· 준공업지역: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
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	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 1.5미터 이상
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	6미터 이하
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	
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)	
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
다.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	· 1.5미터 이상 6미터 이하
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	
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	
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은	
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	
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 및 종교	
시설	
라.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	· 1.5미터 이상 6미터 이하
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	
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	
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)로	
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	· 아파트: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
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	· 연립주택: 1.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· 다세대주택: 0.5미터 이상 4미터 이

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	
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	ठो
바.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· 0.5미터 이상 6미터 이하(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,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)

## 비고

- 1)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.
- 2)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(별표 1 제1호,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)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(도로와 접한 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)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3)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최소 0.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.